

의안번호	제89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0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의자 : 박지현,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이동우, 이상정,
유재목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청북도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능 등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안 제5조)
-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실적의 보고(안 제7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
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14. 5. 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7.>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5. 1. 7.>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 7.>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북연구원 내에 설치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추계

나. 추계 결과

- 2025년 350백만원 기준으로 인건비 증가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1,873백만원 소요
* 인건비, 사업비(여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 입		-	-	-	-	-	-
세 출		1,873	350	362	374	387	400
- 충북공공투자 분석센터 운영지원		1,873	350	362	374	387	400
재원 조달		1,873	350	362	374	387	400
도비	소 계	1,873	350	362	374	387	400
	출연금	1,873	350	362	374	387	400